

 신안산대학교	선행경험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운영 규정	규정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책임부서/팀·계	2-4-29 2019. 7. 15. 2024.3.20. 교무처
---	----------------------------------	----------------------------------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시행세칙」 제7조의2에 의거 선행경험학습 학점인정에 관한 절차와 범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점인정 대상자 및 내용) ① 학점인정 대상자는 본 대학 재학생 또는 입학을 허가받은 자로서 선행경험학습의 학점인정을 직접 신청한 자에 한 한다.

- ② 선행경험학습의 학점인정은 대학의 개설·운영하는 교과목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의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학습경험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신청 할 수 있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 3.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교육·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군 복무 중 교육훈련시설이나 본 대학에서 개설한 원격강좌를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제3조 (선행경험학습 이수 학점인정) 선행학습 평가인정을 통한 학점인정범위는 18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제4조(학점인정위원회 구성) ① 선행경험학습 학점인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점인정위원회를 둔다.

- ② 학점인정 신청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학과별 학점인정소위원회를 둔다.
- ③ 학과별 학점인정소위원회 평가 결과는 교학처를 거쳐 학점인정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2021.8.21. 개정><2023. 3. 30. 개정><2024.3.20. 개정>
- ④ 학점인정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한다.
- ⑤ 학점인정소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학과장은 제외한 소속 학과 전임교수 전체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겸임교수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으로서 외부 전문가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한다.

제5조 (학점인정의 준비) ① 각 학과는 선행경험학습의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지표를 교과목별로 개발하여 평가인정 실시 이전에 공개한다.

② 대학과 학과는 선행경험학습인정제도에 대한 홍보 및 이해를 위해 신청 관련한 상담 등 안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제6조 (학점인정의 절차) ① 선행경험학습에 대한 학점인정은 제2조(학점인정 대상자 및 내용)에 의한 학점인정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학과별 학점인정소위원회에서 평가한다.

② 학과별 학점인정소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교학처를 거쳐 학점인정위원회 심의를 받는다.<2023. 3. 30. 개정><2024.3.20. 개정>

③ 학점인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2021.8.21. 개정>

④ 총장의 승인 내용을 학과에 통지한다.

제7조 (학점인정 신청) ① 학점인정 신청자는 입학허가 시점부터 졸업이전 시점까지 매 년 1회 학

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대학과 학과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학점인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1. 과거 신청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발견되는 자
 - 2. 과거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에서 학점인정위원회가 학점인정 신청을 제한한 자
- ③ 학점인정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선행학습 인정학점 신청서 <별지 1>
 - 2. 직무기술서(해당자에 한함) <별지 2>
 - 3. 이력서, 포트폴리오,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자격증 등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 근거자료
 - 4. 학과가 학점인정을 위해서 직접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신청자는 위 제3항 3호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학점인정소위원회 평가) ① 학점인정을 위한 평가는 신청 교과목별로 실시한다.

- ② 소위원회는 신청자 제출 자료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소위원회는 신청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신청자는 소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자는 보완 자료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소위원회는 평가결과 통지 후 10일 이상 경과한 뒤 신청자의 추가자료 제출 등의 조치를 반영하여 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이때 소위원회는 신청자에게 경과기일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 (평가결과 심의) ①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선행경험학습 학점인정 기준에 준하는지 여부
 - 2. 개별 신청자의 평가인정 학점한도 초과여부
 - 3. 개별 신청자가 향후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에 대한 학습설계 여부
 - 4. 기타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결과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학점인정 결과 통보 등) ① 대학은 학점인정 평가결과를 총장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각 신청자와 학과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학점 인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 1. 학생의 인적사항
 - 2. 학점인정을 받은 교과목 세부내용: 교과목명, 인정학점, 수업시수, 평가년도
 - 3. 신청자가 선행학습으로 인정받은 총 학점
 - 4. 학과가 규정하고 있는 선행학습인정 최대 학점 수
 - 5. 학습자에게 향후 학습수행에 도움이 되는 권고사항

제11조 (학점인정 결과적용) 대학은 학점인정(선행학습) 평가에 따른 인정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 평가 인정된 교과목에 대한 수강 면제
- 평가 인정된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평가 인정된 학점은 학점인정 범위 내에서 졸업학점에 포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선행경험학습학점인정신청서		결재	지도교수	학과장		
학과명			학번			
성명		학년/반				
선행경험학습 인정범위 (해당란 ○표)	① 다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②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③ 다른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교육·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군 복무 중 교육훈련시설이나 본 대학에서 개설한 원격강좌를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경력인적사항 (근무·교육· 연구·실습)	연번	기관명	기간	부서명/ 교육명	담당업무
평가인정 신청과목	구분 ex) 전필	신청 교과목 명		학점	시수	교과목코드

본인은 학칙시행세칙 제7조의2에 의거하여 학점인정을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된 문서와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학점인정 취소 등을 포함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00000과 학과장 귀하

첨부자료: 과목별 학점인정 신청서,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이력서, 포트폴리오, 경력증명서, 성적증명서, 교육이수증명서, 자격증 등 선행학습 이수 실적에 관한 내용

〈별지 2〉

직무기술서

신청자 정보	성명				
	학번	학과명			
	학년/반	연락처			
일반·위탁·심화					
직무 및 교육 경험 요약(직무 <input type="checkbox"/> / 교육 <input type="checkbox"/>)					
교육 경력	최종 학력				
	전공				
	기타 교육				
	자격증				
직업 경력	직업 종류	자영업 ()	직장 ()	프리랜서 ()	
		회사명		직종	
		부서명		직위	
		주소		전화번호	
* 아래의 내용은 직무내용, 교과목과의 관련성, 경험 시기 및 빈도, 숙달 정도, 관련 직무 수행 시 고려 할 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개요					
업무내용					
관련 자격증 및 경력사항					

제출일: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신안산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3〉

선행경험학습인정 교과목 평가 항목서

학과명		성명/학번	
학 점		수업시수	이론(), 실습()
교과목명		교과목코드	
교과유형	ex) 전공 필수/전공 선택		
교과목표			

□ 과목평가 사항

평 가 항 목 1	확인사항(주제)	
	평가핵심 준거/기준	
	관련직업 생활요소	
	인정가능 자료유형	
	관련 질문	
평 가 항 목 2	확인사항(주제)	
	평가핵심 준거/기준	
	관련직업 생활요소	
	인정가능 자료유형	
	관련 질문	
평 가 항 목 3	확인사항(주제)	
	평가핵심 준거/기준	
	관련직업 생활요소	
	인정가능 자료유형	
	관련 질문	

<별지 4>

선행경험학습 인정 평가서

학과명		평가년도/학기	
학번		성명	

과목평가 사항

교과목명		개설년도-학기	
학점		수업시수	
과목구분	교양(), 전공(),		
교과목표			

평가 항목 1	확인사항(주제)	
	평가핵심 준거/기준	
	관련직업 생활요소	
평가 항목 2	확인사항(주제)	
	평가핵심 준거/기준	
	관련직업 생활요소	
평가 항목 3	확인사항(주제)	
	평가핵심 준거/기준	
	관련직업 생활요소	

항목별 평가 내역

평가 항목	평가자료 유형						위원별 평가 결과					
	자기 보고서	성과물 /작품	면담	필기 시험	실기 시험	기타	위원1		위원2		위원3	
							수준	논평	수준	논평	수준	논평
1							상	우수	상	우수	상	우수
2							상	우수	상	우수	상	우수
3							중	우수	중	우수	상	우수

최종판정

종합평가 결과				종합논평	예) 능력이 충분함. 아주 우수함			
위원1	위원2	위원3	종합	권고사항				
예)상	예)상	예)상	예)상					
92	96	94	94					

*종합평가결과 : 상(85~100점) 중(60~84)/ 하(60점미만)

〈별지 5〉

선행경험학습이수인정 학과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안건	선행경험학습이수인정 신청자 서류 검토
주요 회의내용	

위 사실을 확인하고 날인함.

2019. . .

()과 소위원회 위원장(학과장) : (서명)
위 원 : (서명)

〈별지 6〉

선행경험학습 인정학점 신청서

1. 신청자 인적사항

학과명	성명	학번	비고

2. 경력 인적사항

연번	근무기관	근무(교육·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비고

3. 신청과목 :

4. 신청학점 :

5. 신청사유 :

붙임 : 해당서류 각 1부

위와 같이 선행경험학습 인정학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학과장 귀하